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08
----------	-----

2025. 10. 14.  
경제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9. 30. 강남구청장(보건행정과)

나. 상정의결

-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0. 14.)  
“ 수정가결 ”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보건소장 이종철 )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수수료)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함과 동시에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별표(수수료 및 진료비)를 보건소의 운영현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건강진단결과서의 수수료 근거규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명시(안 제1조, 제2조제2항, 별표)
- 나. 진료비 등 면제대상자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다. 면제 대상자 확인 의무사항 신설(안 제3조제3항)

라. 별표의 종목 및 금액을 현행화하고, 수수료 무료대상의 범주를 조례 본문과 통일시키며, 자구 수정 등 종합적으로 정비(안 별표)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5. 8. 22. ~ 2025. 9.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전문위원 : 이주현 )

가. 개정 취지 및 배경

○ 위임 규정의 명시

- 1988년 5월 이 조례 제정 당시부터 위임 근거가 되는 기존의 상위법령은 「지역보건법」이었음.
- 2023년 11월 정부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검진 수수료 금액 결정 권을 조례에 위임하였으므로, 이 조례의 목적 규정에 총리령인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이 상위법령으로 추가됨.

○ 조문 정비의 필요성

-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실제 업무에서 이행하는 내용이 동일하도록 현행

화 하는 한편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삭제된 조항을 처리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전반적으로 대폭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됨.

나. 검토 내용

○ 목적 규정

- 안 제1조는 기존 「지역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이 조례에 모두 추가되었으므로 위임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것임. 다만, 실무에서 이미 그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위법령의 제명을 조례에 포함하지 않았기에 이번 개정을 통해 명시하게 됨.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보임.

○ 수수료 및 진료비

- 안 제2조는 진료비 및 수수료 적용기준을 규정한 것임.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음.
- 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수료와 진료비 적용기준과 그에 따른 상세 내역이 별표와 같음을 규정한 것임.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확인하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근거 규정	
제1조(목적)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지역보건법**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49호]

**제25조(수수료 등)**

-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21.] [보건복지부령 제1118호]

**제10조(수수료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하 생략)

- 담당부서인 보건행정과는 이 조례 전부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가독성과 간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정비에 나섰음. 입법예고 기간 뿐만 아니라 조례·규칙심의회 입안심사 통과 이후에도 책임감 있게 자치법규의 대외적 효력을 고려하고 안전 자료를 갖추어 협의하였음.

**< 부서 의견 >**

[보건행정과] 다음 2가지 항목은 구별 필요성이 있음.

-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변동하는 진료수가
- 그 외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

- 그 결과 자치법규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반복되는 문구를 줄여 간결성을 갖추고 입안기준에도 부합하는 수정 의견이 부서 의견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음.

**< 적용기준 규정 비교 >**

원 안	수 정 의 견
<p><b>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b>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에 대한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p> <p>②·③ (생략)</p>	<p><b>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b> ①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같이 한다.</p> <p>②·③ (원안과 같음)</p>

## ○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면제

- 안 제3조는 강남구청장이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와 ‘대상자(사람)’을 명시한 것임.
- 현행 조례에 따르면 수수료 또는 진료비 면제가 가능한 ‘경우’와 ‘대상자(사람)’이 하나의 항에 포함되어 있어 조문 구성의 체계성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였으나, 이번 조례안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를 각각의 항으로 구분하였고 타당하다고 생각됨.
- 안 제3조제2항에서 호 신설을 통하여 추가된 대상자는 각각 제4호(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제5호(참전유공자)·제6호(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등)·제8호(장기복무 제대군인)에 해당하고, 이들은 다른 자치구에서도 면제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면제대상자 추가의 범위는 타당하다고 보임. 제9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반영하여 자구를 수정하였고 바람직하다고 보임.
- 안 제3조제3항은 수수료 또는 진료비 면제대상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문의 내지는 민원 소지를 줄일 수 있어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 납부방법

- 안 제4조는 수수료 및 진료비의 납부방법은 선납임을 명시하는 것이고 현행과 같음.

## ○ 허위신청

- 안 제5조는 허위신청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 조치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징수 주체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내용은 현행과 같음.

## ○ 별표

- 안 별표에서는 종목 등을 현행화하고 비고란에 설명을 덧붙여 이해가 쉽도록 정비하였음.

- 안 별표 제1호에서는 미시행 중이거나 더 이상 추가로 부과하지 않아 무료나 다름없는 항목(현행 다목, 아목, 차목, 카목, 파목)을 삭제하고, 이미 시행 중인 항목(안 별표 제1호 마목, 바목, 사목)은 실제 업무와 부합하도록 신설함.
- 안 별표 제3호에서는 각 목의 수수료에 대한 면제대상자를 설명하는 근거 규정을 비고에 기재하여 명확성, 가독성을 높였고 바람직하다고 보임.

#### 다. 종합 의견

##### ○ 입법기준에 따른 조례의 명확성 제고

- 1) 위임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2) 수수료 또는 진료비 면제 가능한 경우 및 면제대상자를 구분하고, 3) 자구 수정 및 별표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였음.

##### ○ 면제대상자 범위 확대

- 수수료 또는 진료비 면제대상자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세입 규모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부서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을 통해 추가되는 신규 면제대상자의 약 89%가 이미 현행 규정에 근거한 면제대상자이므로, 나머지 약 11%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면제로 감소할 연평균 세입 규모는 비용추계가 요구되는 수준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부서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70375호]

### 제28조(조례)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지역보건법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49호]

### 제25조(수수료 등)

-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21.] [보건복지부령 제1118호]

제10조(수수료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9조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식품위생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46호]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7.] [총리령 제1977호]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24. 11. 23.] [총리령 제1916호]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